

#### 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대여자 사망하여 상속인이 원고)

# 소 장

원 고 1. 김〇〇 (주민등록번호)

2. 김〇〇 (주민등록번호)

3. 박〇〇 (주민등록번호)

위 원고들 주소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대여금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 김〇〇, 김〇〇에게 각 〇〇〇원, 원고 박〇〇에게 〇〇〇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 김○○과 김○○은 20○○. ○. ○에 사망한 소외 망 김◇◇의 자녀들이고, 원고 박○○은 소외 망 김◇◇의 처입니다.
- 2. 소외 망 김◇◇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관계로 평소 친하게 지내면



서 상호 친분이 있던 중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망 김◇◇로부터 자신의 아파트입주의 잔금이 필요하다면서 입주한 뒤 대출을 받아 20○○. ○○. ○○. 에 갚겠다고 하면서 이자는 정하지 않고 금 ○○○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(갑 제1호증 차용증사본 참조).

- 3. 그런데 피고는 소외 망 김◇◇에게 위 돈을 빌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입주한 뒤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대출을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낭비하고, 다시 지나치게 많은 채무 때문에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에도 여전히 소외 망 김◇◇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.
- 4. 소외 망 김◇◇는 피고의 이와 같은 태도에 분개하던 중 평소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되어 20○○. ○. ○. ○○. 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고, 소외 망 김◇◇의 자녀인 원고 김○○, 원고 김○○와 처 원고 박○○은 소외 망 김◇◇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소외 망 김◇◇의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○○, 김○○은 각 금 ○○○원(○○○원×2/7), 원고 박○○은 금 ○○○원(○○○원×3/7)의 상속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.
- 5.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돈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김〇〇, 김〇〇은 각 〇〇〇원, 원고 박○〇은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.

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차용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기본증명서

(단, 2007.12.31.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)

가족관계증명서

(또는,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)

### 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1. 김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2. 김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3. 박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·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없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 하게 되는 것임(민법 제397조).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